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 상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쟁점 사항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농촌 빈집, 폐교 실태와 활용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10월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 상황

※ 본 자료는 11월 15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김장철 주요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 전망

- **김장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평년에 비해 6% 감소하였지만 **생육기 기상 호조**로 작황이 좋아 **평년 수준 유지 전망**(KREI, 농업관측센터)
 - 11월 중순까지는 평년에 비해 10%정도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지나, 11월 하순부터 주산지인 **충남·전북·전남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김장배추가 출하되면 평년 수준의 공급이 가능**
- **배추와 무**는 11월 상순에 비해 출하량이 늘어나고, 농협과 대형유통업체 할인 판매 영향 등으로 **소비자 가격이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 배추: (11월 상) 3,038원/포기/상품 → (11월 12~14일) 2,912원(평년 2,224원)
 - ※ 무 : (11월 상) 2,304원/개/상품 → (11월 12~14일) 2,162원(평년 1,588원)
- **건고추와 마늘**은 소비자들이 미리 구매를 많이 하여 수요 증가 요인은 많지 않아 **김장철은 현재보다 약보합세로 예상**
 - ※ 건고추: 소매가 15,277원/600g/상품(평년 8,331원, 전년 17,387원)
도매가 10,200원/600g/상품(평년 6,814원, 전년 14,200원)
 - ※ 간마늘: 소매가 7,750원/kg/상품(평년 6,568원, 전년 6,609원)
도매가 6,000원/kg/상품(평년 4,446원, 전년 5,880원)

□ 수급안정대책 주요내용

- 김장비용은 앞으로 세차례(11.22, 11.29, 12.7)에 걸쳐 발표하여 **소비자들의 적기 구매를 유도**
 - **김장비용**이 매년 조사기관별로 다르게 발표되고 있어 **통일된 조사기준을 설정**하고, **객관적 비교가 용이하도록 김장비용을 지수화**하여 발표

○ 정부비축 물량은 시중가에 비해 10~30% 싸게 판매할 계획

- 정부 비축 배추 4천 톤, 무 1천 톤을 대형 유통업체, 나들가게(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소매시장 중심으로 공급**하고, 수급 및 가격동향에 따라 도매시장 상장, 김치업체 공급도 병행할 계획
 - ※ 농협 계약재배물량도 11월 초부터 자체 계통매장을 통해 싼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고, 도매시장에도 상장되고 있음.
 - ※ 마늘은 정부비축 물량 4,609톤을 11.1일부터 매주 600톤씩 방출
 - ※ 건고추는 11.7일부터 정부비축 물량 1,693톤을 매주 200톤씩 방출

○ 김장철에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농협 매장, 시청·구청 광장 등지에 **임시 김장시장 157개소를 개설·운영**

- 임시김장시장은 농협,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며, 김장 채소류를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
 - ※ 운영기관별: 농협 120개소, 지방자치단체 28, 생산자단체 등 9
- 시기는 지역별 김장여건을 고려하여 11월 중순~12월 중순에 개설
 - ※ 주시기: 수도권·중부지방은 11월 하순~12월 상순, 남부지방은 12월 상·중순

주요 농정 이슈_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과 쟁점사항

※ 본 자료는 11월 8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농민신문사의 관련 보도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제안이유

- (토지용도 확대) 2007년도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서 **새만금사업 범위를 농업·산업·관광·도시·환경 부분 등의 개발로 확대**
 -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2011.3.16)에서는 **30%를 첨단농업용지 등 농지로 조성**하고 **70%를 산업용지·관광용지·물류용지·국제업무용지·과학연구용지·신재생에너지용지·주거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개발하도록 **토지용도 변경**
- (사업 소관 정부부처 분산으로 효율성 저하) 토지용도 변경에 따라 새만금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환경부 등 **6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효율적인 사업 수행 지장**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 저하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도 부처별로 확보되다보니 필요한 만큼 확보되지 못함.
- (민간 참여 촉진 저해) 현재 새만금사업 추진방식은 민간이 초기개발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제정안 주요내용

- 종합개발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보고 토지용도를 기본계획에서 정한대로 구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만금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 기본계획에 연차별 재원조달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개발청장이 연차별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기본계획수립,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용도별 개발 기본계획 승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개발청장이 일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 기본계획의 승인 효과에 「경관법」·「연안관리법」·「수도법」·「하수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가함.
- **이 법 시행일에 공유수면매립 승인권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관되고 매립면허가 일괄 개발청장으로 이관**됨을 규정함.
-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사항에 「항만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연안관리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등 총 11개 사항을 추가함.
- 매립용지의 분양원가를 인하기 위해 도로·철도·공항·항만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을 국비로 우선 지원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의 지역을 국가가 직접 개발하여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사업 초기에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매립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개발환경이 안정화된 새만금사업 후기에 매립용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하여 그 결손금을 충당하도록 매립용지 공급가 차등제도를 도입함.
- 민간 및 공공시설 수요에 대비한 유보개념의 공공토지를 국가가 일정비율 이상 비축하도록 하여 청사, 녹지, 광장 등 대규모 공공시설의 수요에 사전 대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산업기업, 관광사업, 교육·의료기관 등 새만금개발의 앵커산업유치를 위한 임대 토지를 보유하도록 함.

- 새만금위원회에서 선도지역 국가직접개발, 공공토지비축, 매립용지 공급가 차등제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 국공유 토지 임대가능 업종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을 추가**함.
- 새만금사업지구의 행정구역 확정 전까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착수·변경·완료에 관한 신고의 소관 관청을 새만금개발청으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기한을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둠.
-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공사에 대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찰 참가자격을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축조 및 관리**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지역이 중국과 거리상 가까운 지리적 잇점을 이용하여 중국관광객 및 중화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 설치허가 규정**을 둠.
- 행정구역확정 전까지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자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칙으로 규정**함.
- 이 법을 제정함에 따라 필요한 경과규정 등을 둠.

□ 행정사항

- (**특별회계 신설로 농업예산 3조 원 환수 불가능**)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의 신설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대금이 **농지관리기금이 아닌 새만금특별회계에 무상양도**되는 것이므로 농업예산 **3조 원의 환수가 불가능**하게 됨.

· 무상양도는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며, 그간 유상양도 사례와도 맞지 않음.

※ 농지관리기금법은 물론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매각대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

※ 그동안 30여건의 매립지를 분양하면서 무상양도한 사례가 없음.

· 새만금 매립지를 특별회계에 무상양도하면 그동안 유상으로 양도 받았던 다른 지자체의 반발 예상

○ (농지 조성 비율 축소 우려) 공유수면매립 승인권 및 기본구상 수립 권한이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정된 농지 조성 비율(30%) 조차도 축소될 우려

- ①용도별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②용도별 위치 및 면적 규모, ③재원 조달대책 등 새만금사업의 총괄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어 필요에 따라 토지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농지조성사업 차질 우려) 매립면허권을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는 농지조성사업의 차질이 우려

- 매립면허권과 사업추진 권한이 분리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립지 준공 승인을 오히려 국토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모순 발생

-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립면허권 이양 대상에서 농지·방조제·담수호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

○ (특별회계기금의 사용처 논란) 특별회계기금으로 도로·철도·상하수도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유지하도록 하면서 방조제 및 담수호 관리는 제외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

※ 본 자료는 11월 9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2012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하락(전년 동월대비 0.2% 상승)

- 농림수산물: 채소류와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월대비 8.8% 하락(전년 동월대비 3.3% 상승)

- 공산품: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 및 화학제품이 내리고 건설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1차금속제품도 내려 전월대비 0.6% 하락(전년 동월대비 0.7% 하락)

- 서비스: 운수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상승(전년 동월대비 1.2% 상승)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7월	8월	9월	10월	'12.7월	8월	9월	10월
총 지 수	1000	-0.5	0.7	0.7	-0.7	-0.1	0.3	1.0	0.2
농 립 수 산 품	43.6	0.2	5.5	5.9	-8.8	-3.4	-2.9	7.4	3.3
곡 물	11.0	0.0	-0.2	-1.0	0.1	5.8	5.7	4.7	5.4
채 소	7.4	9.5	13.4	29.5	-22.5	2.5	-3.4	30.2	18.3
과 실	5.3	-4.6	11.2	2.2	-1.4	9.3	16.9	30.5	32.1
축 산 물	12.0	-2.9	0.9	-3.6	-7.9	-12.6	-11.8	-10.2	-12.0
수 산 식 품	5.3	0.5	0.9	2.1	-2.5	-12.5	-12.7	-4.2	-6.6
공 산 품	644.8	-0.8	0.6	0.7	-0.6	-0.7	-0.2	0.0	-0.7
석 유 제 품	59.7	-2.5	3.2	3.6	-1.4	-0.8	2.7	5.2	2.4
화 학 제 품	55.2	-1.7	1.8	2.3	-0.1	-2.8	-1.7	-1.0	-0.8
1 차 금 속 제 품	65.6	-1.7	-0.8	0.6	-2.0	-6.7	-7.5	-6.4	-7.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93.7	-0.9	-0.5	-0.9	-1.1	-0.2	-0.5	-2.1	-3.1
전력·수도·가스	44.5	0.1	2.7	-0.1	0.1	7.5	7.8	7.5	4.9
서 비 스	264.4	0.2	0.1	0.0	0.2	0.7	1.0	1.3	1.2
운 수	61.6	0.5	0.1	-0.7	0.7	2.5	2.3	1.5	1.6
통 신	48.6	0.1	0.0	0.0	0.1	-0.9	-0.9	-0.4	-0.2
금 융	27.4	0.0	0.9	1.4	-0.2	-7.1	-2.8	0.1	-0.8
전 문 서 비 스	43.3	-0.2	-0.1	0.5	-0.1	2.1	2.1	2.4	2.3

단위: %

□ 특수분류별

- 식료품은 전월대비 4.7% 하락(전년 동월대비 3.4% 상승)
-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13.8% 하락(전년 동월대비 19.4% 상승)
- 에너지는 전월대비 0.8% 하락(전년 동월대비 3.1% 상승)
- 신선식품및에너지이외는 전월대비 0.4% 하락(전년 동월대비 0.6% 하락)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7월	8월	9월	10월	'12.7월	8월	9월	10월
식 료 품	81.3	0.5	2.6	3.4	-4.7	0.1	0.2	5.7	3.4
식 료 품 이 외	918.7	-0.5	0.6	0.4	-0.3	-0.1	0.4	0.6	-0.1
신 선 식 품	16.4	3.2	10.8	17.5	-13.8	-3.4	-3.8	26.9	19.4
신선식품이외	983.6	-0.5	0.6	0.4	-0.5	0.0	0.4	0.6	-0.2
에 너 지	93.8	-2.3	2.5	2.2	-0.8	2.8	4.4	6.3	3.1
에너지이외	906.2	-0.2	0.5	0.5	-0.8	-0.4	-0.2	0.3	-0.2
I T	175.1	-0.5	-0.2	-0.1	-0.4	-1.3	-1.3	-1.5	-1.6
I T 이 외	824.9	-0.5	0.9	0.8	-0.8	0.1	0.6	1.4	0.5
신 선 식 품 및 에 너 지 이 외	889.8	-0.3	0.3	0.2	-0.4	-0.4	-0.2	-0.3	-0.6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농촌 빈집, 폐교 실태와 활용

□ 농촌지역 빈집 및 폐교 현황

□ 농촌지역 빈집 현황

- 현재 전국 농어촌에 있는 빈집은 28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매년 증가 추세
- 관계법령: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 제12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매년 시장, 군수는 빈집의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관리실태

- 대부분 장기간 방치, 들짐승 드나들고 쓰레기 버려 흉물스러워, 자연경관을 해치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 지적
-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시군 빈집정비사업 예산 전체 빈집의 10%미만으로 실효성에 의문

○ 활용실태

- 농식품부, 농어촌 빈집 정보 www.onbid.co.kr/ 사이트 개설, 700여건 정보 제공
- 전국 157개 시군에 '農漁村 빈집정보센터' 설치 운영
- 농어촌빈집찾기사업단: www.cohousing.or.kr 운영

□ 농촌지역 폐교 현황

- 현재 전국 농어촌에 있는 폐교는 3천500여개에 달하고 이 중 500여 곳은 방치
- 지자체의 폐교활용 관련 체계 정립과 사·도교육청-기초지자체 간 역할정립이 중요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폐지학교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전국 폐교 현황과 활용 실태(2011.4월 기준)

시도	폐교	매각	미활용	활 용							자체 활용	계
				교육 시설	사회복 지시설	문화 시설	공공체 육시설	소득증 대시설	기타	소계		
합계	3,438	1,939	466	272	65	84	15	220	161	817	216	1,033
서울	1	1	-							-		-
부산	12	5	4	3						3		3
대구	27	12	1	2		4			1	7	7	14
인천	46	24	7	3				2	7	12	3	15
광주	14	6	-	4	2	1		1	-	8		8
대전	8	3	1	3						3	1	4
울산	21	8	1	3	1		1		1	6	6	12
경기	162	64	19	35	4	10	4	3	1	57	22	79
강원	416	127	42	43	8	14	4	81	79	229	18	247
충북	220	96	27	42	6	5	1	21	11	86	11	97
충남	259	182	34	9	4	7	1	4		25	18	43
전북	319	264	29	5	2	3		1		11	15	26
전남	751	492	176	20	5	10		14	2	51	32	83
경북	632	384	54	40	16			53	35	144	50	194
경남	517	267	65	44	15	29	3	38	23	152	33	185
제주	33	4	6	16	2	1	1	2	1	23		23

자료 출처: 인터넷 검색

□ 폐농가(빈집), 폐교 실태와 활용방안

○ 마을에 7~8채의 빈농가 → 부작용 많아 정부가 정비 나서야

- 우리 마을에는 폐교 하나와 7~8채의 빈농가가 있음. 빈집에 대한 소유권은 도시에 사는 자손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 없는 빈집이라 할 수도 없음. 그래서 부락에서 마음대로 철거도 못하고 또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철거를 하려 해도 남아 있는 빈집들이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이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이라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철거 또한 어려운 실정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폐가를 리모델링하여 농산물집하장이나 체험민박집 등으로 활용하면 좋겠음.<충남 청양, 장석우>
- 농촌지역에는 폐가는 집주인이 타지에서 살면서 쓸 만한 집인데도 팔지 않고 있고, 판다고 해도 비싼 가격 때문에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전남 화순, 나종주>

○ 폐농가 수 파악하여 귀농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 농촌은 현재 집주인이 농촌을 떠나거나 노인이 거주하고 있다가 농가를 이어 받을 후계자가 없어지면서 점차 빈집이 늘어나고 있음.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폐농가 수를 파악하여 재정비하거나 대신 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함. 귀농인 또는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살 수 있도록 폐가를 주택개량이나 증개축을 해서 제공해 주든지 과감히 철거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임.<경남 김해, 김병철>
- 수도권에 인접해 거주하다보니 우리지역에 폐교나 폐가는 없지만, 농촌을 지키려면 절대로 폐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폐교를 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스스로 학교를 지켜야 앞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도 유치할 수 있을 것임.<경기 남양주, 김용덕>

○ 빈집 철거비 지원에 폐기물 처리비용 포함 등 현실화 필요

- 지금의 농촌은 과거에 비하면 살기 좋아졌으며 삶의 질 또한 많이 향상 되었다고 봄. 그런데 농촌마을마다 폐농가, 즉 빈집들 때문에 환경을 어지럽히고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우리국민들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현실점에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대대

적으로 빈집 정비를 해서 농촌마을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임.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그 중에 양호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정책적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요구됨. 현재 빈집 철거비를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등 철거비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전남 장흥, 주양호>

○ 폐교, 홍물스럽고 청소년 탈선장소 우려 → 어린이 학습장 활용 필요

- 우리지역은 개발지역이라 폐농은 거의 없으나 폐교가 한 곳 있는데, 폐교는 홍물스럽기도 하고 청소년 탈선과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염려가 있으니 마을이나 관계기관에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라고 봄. 다른 지역에서 폐교를 어린이 체험학습장으로 쓰고 있어 지나가다 들른 적이 있었는데, 대나무 밑에 통나무의자를 만들어 독서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고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 꽤 좋아 보였음. 우리지역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으나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폐교를 저렴하게 임대해주어 좋은 활용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음.<부산 기장, 최시훈>
- 폐교를 농촌에 문화생활공간과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해야할 것임.<충남 청양, 장석우>
- 농촌지역에 폐가와 폐교의 수가 늘어나면서 잡초만 우거져 점점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가를 수리해서 귀농인의 주택으로 활용하고, 폐교는 각종 농산물에 대한 저온저장 시설 또는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등으로 설치해 활용하는 것이 좋겠음.
<전남 순천, 김종근>

○ 폐교를 민박이나 체험장,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

- 국립공원 오대산내 우리 마을은 폐교를 민박이나 체험장 등으로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음. 삼산3리(부연)폐교는 경치가 수려해서 1박2일의 촬영을 한 뒤로 동네에서 다양한 시골 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해 이용자가 늘어났음. 여름철에 민박을 하거나 회사에서 야유회를 오기도 함.
<강원 강릉, 송인숙>

- 우리지역의 폐교 실태를 보면 대개 읍면에 1개교 정도이고 일부는 종교 시설로 이용되고 또 일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폐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모이다보면 실내에서는 자연스럽게 지역적 특색 있는 문화 활동 등의 활용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됨.<충남 당진, 남도성>

○ 폐교 처리 농교 교육청과 주민 갈등, 관리체계 일원화도 필요

- 우리 마을에는 폐교가 3개가 있었는데 1개교는 도교육청에서 매도를 했고, 다른 1개교는 장기임대료 임실 치즈학교로 운영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1개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잡초만 나있는 실정임. 폐교는 당초 지역주민과 땅 주인한테 싸게 매매해서 설립했지만, 이제는 땅주인이 도교육청이다 보니 매도하는데 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기도해서 매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전남 화순, 나종주>
- 폐교의 경우, 재산관리는 지방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유지관리는 지방 관리청에서 관할하니 이원적인 폐교관리 탓에 폐교의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폐교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도 문제지만,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폐교직전의 초등학교가 늘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교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경남 김해, 김병철>

○ 소규모학교 유지와 폐교 대상학교 살리는게 우선

- 우리 통영지역은 섬이 많은 관계로 타 지역에 비해 폐교가 특히 많아 지금까지 53개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이 중 매각이 27개교, 유상 대부가 12개교, 학생야영수련원 1개교, 아직 미활용 폐교가 13개교임. 그리고 현재 학생수가 1~6명 이내로 당장 폐교될 위기에 처해있는 학교도 5개교 정도 있음. 학교가 없어지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젊은이들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이촌을 촉진하게 되고 폐가도 더 많이 생겨날 텐데 그저 안타까운 심정임.
- 이왕의 폐교 활용방안도 중요하지만 미리 폐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함. 학교시설을 특화시켜서 도시지역의 아이들이 전학을 올 수 있도록 하여 학교를 살리는 길을 모색하여야 함.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의 학교라는 소문만 나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어디든지 달려 갈 것 같으니 몇몇 사례를 참고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것임.<경남 통영, 이현순>

□ 기타 농업·농촌 관련 여론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 가을철은 특히 농기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임. 농기계 사고원인 중 하나는 운전 부주의가 가장 많고 안전수칙 불이행, 정비 불량, 음주운전 등으로 보는데, 그 중 경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음. 정부는 농기계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운전자에 대한 안전 수칙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전남 순천, 김종근>

○ 독거노인들 식사문제 심각, 해결방안 마련 필요

- 농촌에서는 여성들의 농사일 참여로 가족식사 준비시간이 충분치 못해 갖가지 식품군을 따져 균형 있는 식단을 마련하지 못해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밥을 물에 말아서 대충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 영양결핍 등으로 인한 질병 발생확률이 높음.<경남 창원, 오인하>

○ 대선후보 농가부채 해결방안 제시해야

- 지금 농업·농촌은 가난과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임. 10여 년 전 일반대출 이자가 8% 정도였을 때 농업인들의 정책자금 대출이자 3%에 해당했음. 그런데 현재 일반대출 이자도 3% 정도로 가능해졌음. 대선 후보자는 정책자금 금리를 1%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함. 농업인들이 국민을 식량을 책임지고 있으니 농민의 대출이자 금리와 관련된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 꼭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경기 남양주, 김용덕>

※ 본 자료는 11월 12일~16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송아지생산안정제 변경, 날아간 '972억 원'

-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김선동 의원, 11월 3일,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2011년 기준으로 환원됐을 때 한우 농가에게 지급돼야 할 안정자금 비용추계 검토 비교보고서'의 분석 결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급기준이 '기준가격'에서 '가임암소수'로 변경**됨에 따라 **한우 농가의 피해액은 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송아지생산안정제가 가임암소 기준으로 무력화 돼 **사료값 상승과 소값 하락**의 이중고 속에 **축산경영에 치명적 손상**을 입힘. 한편 **최규성 위원장 등 11명 긴급 공동발의**,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정. 개정 이유에 대해 "정부가 변경한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 운영요령(고시)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동법(축산법 제32조) 제정의 취지를 무력화 시킨 것"

자료 : 한국농정신문(2012.11.12)

□ 올해 종돈수입, MMA기본물량 2.5배

- 한국축육개량협회, **11.9일 현재 수입된 종돈은 4천 662인** 것으로 집계. 이는 이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인 1천 850두의 2배를 넘어선 규모** 올해 수입된 종돈을 살펴보면, **▲원산지별...프랑스산과 캐나다산이 2천 134두, 2천32두**를 각각 기록하며 **전체 수입량의 90%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산 404두, 덴마크산 92두, **▲품종별...요크셔가 2천639두(암 2천464두, 수 175두)로 가장 많았으며**, 랜드레이스 1천533두(암 1천335두, 수 198두), 듀록 466두(암 113두, 수 353두), 버크셔 24두(암 20두, 수 4두)의 수입. 올해 일부 계열화업체 관련 **신축종돈장이 유럽산 종돈을 대거 들여오며 큰 폭으로 수입량이 증가**, 연말까지 70두 정도의 종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

자료 : 축산신문(2012.11.12)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 11.6일, 국무회의, '**농지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사업용지는 경제자유구역, 기업 도시개발구역, 공공건설임대주택,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시설용지 및 체육시설 등 7곳**. 이들 사업용지는 종전에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았다가 감면기한이 종료됐으며, 이번에 재감면 혜택을 받게 됨. 이번 개정안은 **민간경제 활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향후 **경제 활력창출에 기여**.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대한 감면으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농식품부 관련자, "2006년~2010년까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이 많았고, 2011년 전까지는 농지가 매년 2만ha 정도 줄다가 2011년 1만 3,000ha정도로 예년 감소 수준"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에 수납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쓰여 짐.

자료 : 한국농정신문(2012.11.12)/ 원예산업신문(2012.11.14)

□ 산지쌀값, 국가 공식통계 지정될 듯

- 통계청, 11.9일, 정부는 현재 비승인 통계로 남아 있는 **산지쌀값 조사 결과가 국가 공식 승인통계로 지정**될 전망.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 결과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 산출에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중요한 통계**지만, 그동안 승인통계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는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이용. 이 때문에 농업관련 연구기관과 양곡업계, 산지쌀값 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가 공식 승인 통계로 지정, 조사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결과를 대외적 발표** 요구. 한편 통계청은 현재 각 시·도별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민간 도정공장들의 판매장부상 기록된 실제 쌀 판매값 등을 현지 조사해 매달 5·15·25일 기준 산지쌀값을 산출하며 농림수산물부 등에서는 이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

자료 : 농민신문(2012.11.12)

□ 웰빙잡곡 종자공급 시작

- 실용화재단, **국내 잡곡 종자 30%까지 늘릴 터**.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채종단지에서 올해 수확한 **국내개발 잡곡 종자를 전국 농가에 공급**할 계획*. 이번에 공급하는 조, 수수, 기장 및 메밀 종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좋고,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올해 공급할 종자 15톤은 563ha에 재배할 수 있는 양이며, 약 1,225톤의 잡곡을 생산할 수 있어 **국내 잡곡 자급률을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조, 수수, 기장, 메밀뿐만 아니라 들깨와 참깨 등 다양한 작목의 순도 높은 고품질 잡곡 종자를 생산해 공급할 계획

※ 실용화재단은 올해 5월부터 영월 한반도면에서 4품목 7품종을 채종 매뉴얼에 따라 생산했으며, 엄선된 종자 약 15톤을 이번 달 하순부터 전국 농가와 잡곡단지 등에 판매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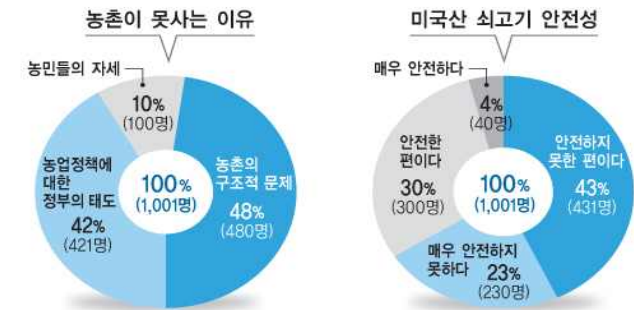
자료 : 한국농정신문(2012.11.12)

□ “영세고령농 국민연금 지원…생존권 보장”

- **영세고령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국고보조지원 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농어업인 수급자 60만9,000명의 월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이 19만1,000원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월 평균 수급액 28만2,000원의 68%수준**에 불과. 특히 월 기준소득금액 79만원을 초과한 경우 3만5,550원, 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기준소득금액을 상향조정, 고령농업인의 보험료납부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 ▲국민연금 등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는 제도는 고령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가 보조지원을 확대해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 연금보험료 지원방식도 농가단위에서 농업인 부부 개별 지원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 이와 관련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향상 추진** 및 내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 (농식품부 관계자)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2.11.15)

□ “농촌 못사는 이유, 구조·정책 탓” 90%



- 박민수 의원·법률소비자연맹, ‘수입농산물 안전성과 농촌생활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농촌이 못사는 이유…‘농촌의 구조적인 문제’,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요인**이란 응답이 90%, **▲농산물가격 상승의 원인…유통업자(57%)와 정부(27%)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43%)**, ‘잘 지켜지고 있다’(1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22%)**, ‘폐지해야 한다’(18%), **‘재협상해야 한다’(60%)**, **▲광우병 파동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안전한 편이다(또는 매우 안전)’(34%)**, **‘안전하지 못한 편(또는 매우 불안전)’(66%)**, **▲농촌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교통불편(24.9%)**, 의료시설 이용불편(18.7%), 적은 수입(17.3%), 자녀 교육문제(17.1%) 등으로 조사되어 농촌 실정에 맞는 정책·비전 필요성 시사

※ 전국의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9월20일~10월20일 진행,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3.1%

자료 : 농민신문(2012.11.14)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10월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 본 자료는 11월 9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10월 농림수산물 수출 6.7억 불,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총괄

○ 10월 농림수산물 수출은 6.7억 불로 전년 동기(6.2억 불)대비 7.8% 증가하였고, 1~10월 누계 기준으로는 63.1억 불로 전년 동기(60.3억 불) 대비 4.6% 증가

- 부류별로는 가공식품이 9.1%의 높은 증가를 기록했으며, 수산식품은 7.7%, 신선식품은 3.7%의 증가세를 보임.
- 지역별로는 ASEAN과 EU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출확대에 기여
- 품목별로는 참치, 궤련, 김 등 대형품목이 수출증가에 기여

<부류별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불, %

구 분	당월실적(10월)				누계실적(1~10월)			
	'12년	'11년	증감률	비 중	'12년	'11년	증감률	비 중
전 체	671.3	622.8	7.8	100.0	6,308.3	6,033.1	4.6	100.0
신 선	102.8	99.1	3.7	15.3	880.7	798.3	10.3	14.0
가 공	348.9	319.8	9.1	52.0	3,463.4	3,365.2	2.9	54.9
수 산	219.6	203.9	7.7	32.7	1,964.2	1,869.6	5.1	31.1

□ 부류별

- (신선농산물) 밤(12.2%)·배(25.5%)·새송이버섯(21.9%) 등은 증가하였으나, 인삼(△32.2%)·팽이버섯(△40.4%)·닭고기(△30.8%) 등은 부진
- (밤) 가공용 생밤의 중국 수출 증가
- (배) 8월 태풍피해로 인한 수출물량 부족으로 수출 단가가 상승하여 수출액 증가

- (새송이버섯) 10월 중 유럽지역 대형마트와 연계한 홍보관측행사의 효과로 유럽과 캐나다 수출 증가

- (인삼) 미국과 중화권 수출 부진

- (팽이버섯)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현지 생산 증가로 수출 부진

- (닭고기) 베트남 수출단가 하락으로 물량 대비 수출액 감소와 일본의 삼계탕 수입 감소로 수출 부진

- [가공식품] 궤련(90.4%)·제3맥주(104.9%)·비스킷(25.3%) 등은 증가했으나, 설탕(△17.9%)·막걸리(△57.4%) 등은 감소

- (궤련) 주 수출시장인 중동과 중국, 미국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제3맥주) 일본 수출이 크게 증가

- (비스킷) 일본 판매가 회복추세에 있고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산 과자제품 취급이 확대되어 증가

- (조제분유) 중국에서 고품질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수출이 지속 증가

- (맥주) 국제 원당가격 하락으로 수출 감소

- (막걸리) 일본 소비 정체로 수출이 감소

- [수산식품] 참치(286.7%)·김(49.6%)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오징어(△54.8%)·넙치(△15.9%) 등은 지속 감소

- (참치) 횡감용 일본 수출과 통조림 가공용 태국 수출이 고루 증가

- (김) 해외 현지인 수요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수출 호조

- (전복) 주 수출국인 일본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태풍 피해로 물량 확보가 어려워 향후 수출확대는 제한적

- (오징어) 주 수출국 중국의 어획 증가로 수출 감소

- (넙치) 일본 활어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중국으로의 냉동넙치는 수출 부진

□ 국가별

○ ASEAN과 EU 지역 수출이 크게 증가

- (일본) 전년 동월대비 4.0% 증가
※ 주요 품목: 참치(27.5백만 불, 415%), 제3맥주(11.7, 105%), 김(5.3, 20%), 소주(7.4, △26%), 음료(1.4, △72%)
- (중화권) 중국, 대만, 홍콩 전년 동월대비 각각 5.5%, 5.6%, 4.3% 증가
- (ASEAN) 전년 동월대비 20.0% 증가
※ 주요 품목: 참치(28.9, 169%) · 궤련(7.8, 38%)
- (EU) 전년 동월대비 22.4% 증가
※ 주요 품목: 참치(4.4, 275%) · 오징어(2.0, 100%)
- (미국) 전년 동월대비 0.7% 감소
- (러시아) 전년 동월대비 15.4% 감소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